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ontents





Ⅰ.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3

Ⅱ.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의무) 사항 13

Ⅲ. 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사항 64

Ⅳ.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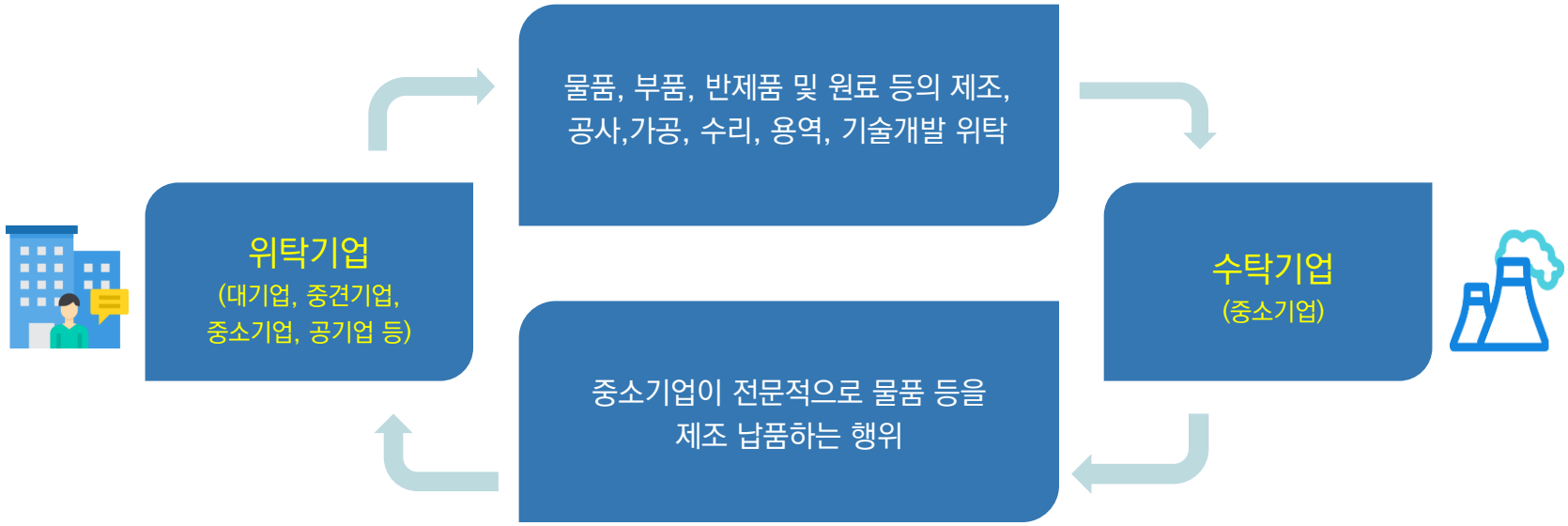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Ⅰ.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수탁 · 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상생협력법(이하,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 :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참조)

② 상한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수탁·위탁거래의 적용대상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

-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포함



수탁기업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

-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르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
- ✓ 단순구매, 대리점, 위탁판매는 수·위탁거래 미포함

상생협력법(중기부)과 하도급법(공정위)비교 – 적용대상

상생협력법(수탁·위탁거래)

대기업·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모든 수탁·위탁거래

*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 하에 수탁기업에 포함 가능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없이 적용 가능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 제조·수리위탁(30억원 미만),
건설위탁(45억원 미만),용역위탁(10억원 미만)



상생협력법(중기부)과 하도급법(공정위)비교 – 거래관계

하도급거래



7 가지 위탁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판매·수리·건설업자	→	제조업자
수리업자	→	수리업자
건설업자	→	건설업자
용역업자	→	용역업자

수탁·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
제조 수리 공사 판매 가공 용역	→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기술개발)

30 가지 위탁내용

위탁기업의 업(業)과 위탁내용 관계 없음

수탁 · 위탁거래 예시

수탁 · 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수탁 · 위탁거래 예시

수탁 · 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명령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회사의 고용으로 보아 인력파견 용역 수탁·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준수(의무)사항 비교

상생협력법(수탁·위탁거래)

■ 하도급법 동일적용 사항

-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제21조)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제21조의2)
- 납품대금의 지급 등(제22조)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제22조의2)
-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합리화(제23조)
- 기타 준수사항(제25조)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때 아래에 대한 행위 금지

부당한 물품수령 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납품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물품 등의 강매/ 추가 납품대금 미지급/ 할인 불가능한 어음 지급/ 부당한 발주물량 감소 및 중단/ 대물변제 요구/ 부당한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 부당한 발주 기피/ 부당한 검사기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의 금지

■ 하도급법과 다른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제25조제1항제13호)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상생협력법 동일적용 사항

- 서면의 발급(제3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제4조)
- 구매강제(제5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제7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검사의 기준 · 방법 및 시기(제9조)
- 감액금지(제11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
- 하도급대금의 지급 · 조정(제13조,제16조,제16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제17조)
- 보복조치 등의 금지(제19조)

■ 상생협력법과 다른 사항

- 선급금의 지급(제6조)
-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3조의2)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8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4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5조)
-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 대-중견기업 간 및 중견-중견기업 간 하도급거래는 제13조, 제19조, 제20조만 적용

준수(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상생협력법(수탁·위탁거래)

- 행정적 제제(벌점에 따른 조치)
 - (교육명령) 1회 2점 이상 또는 3년 누산 4점 이상
 - (입찰참가자격제한) 3년 누산 5점초과
- 벌칙 등
 - (벌금 또는 징역) 공표 후 1개월 이상 분쟁조정 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서류미비치, 교육명령 미이행(500만원 이하), 약정서미발급, 비밀유지계약 미체결(1천만원 이하), 조사시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조사방해등 거래상 지위남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5000만원 이하)
 - (과징금) 없음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행정적 제제(벌점에 따른 조치)
 - (입찰참가자격제한) 3년누산 5점 초과
 - (영업정지요청) 3년누산 10점 초과
- 벌칙 등
 - (벌금) 서면미교부, 부당특약, 부당대금결정 / 감액,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부당위탁취소 등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징역형 없음) / 법위반 신고, 납품대금조정신청, 서면조사 자료제출 보복행위 : 3억원 이하 / 부당경영간섭(원가정보요구, 전속거래강요, 기술자료수출제한, 거래량조절), 탈법, 시정명령 미이행시 : 1.5억원 이하
 - (과태료) 불출석 또는 자료미제출 : 1억원 이하(개인 1천만원) / 조사거부, 방해 : 2억원(개인 5천만원) / 서면조사 자료 미제출 : 5백만원 / 질서유지명령 거부 : 1백만원
 - (과징금) 하도급대금 2배 이내



Ⅱ. 수탁·위탁거래기업 준수(의무) 사항

수탁·위탁거래 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위탁기업

-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의무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
- 납품대금 지급의무
- 납품대금의 조정 의무
- 검사의 합리화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금지
-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납품대금의 지급 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중단 금지
- 대물변제 금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부당발주기피 금지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의무
- 기술자료의 유용행위 금지

수탁기업

- 품질보장 의무
- 약정위반 행위 금지
- 부당한 가격인상요구 금지
- 질서문란 행위금지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약정서 발급의무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의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법 제21조)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포함)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법한 약정서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수·위탁공정화지침'**에서 규정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을 담은 경우

✓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서에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전자메일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발주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기명날인, 서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법 제21조제1항 제4호)

납품대금연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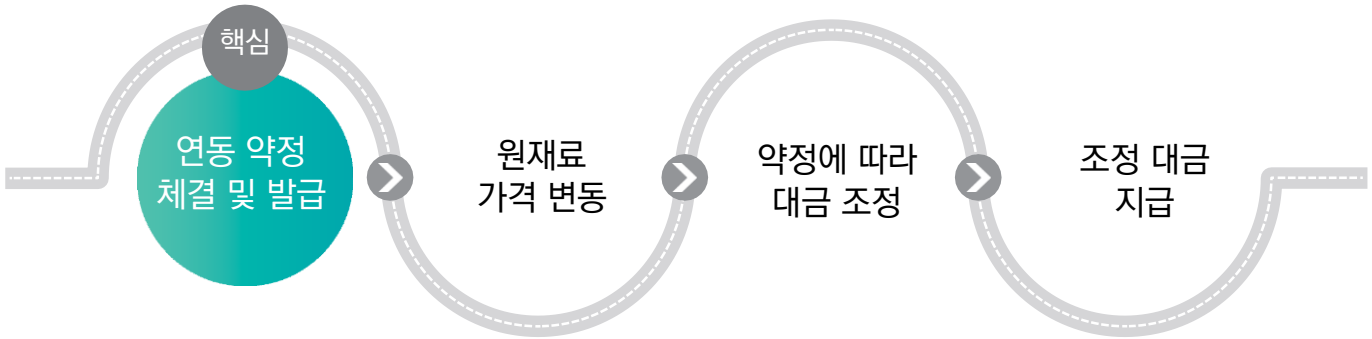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 공사 · 가공 ·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납품대금연동제(법 제21조제1항 제4호)

적용대상 거래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 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

납품대금연동제(법 제21조제 1항 제4호)

연동 약정체결 의무의 예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 (예) 1차 금속 제조업(C24)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 소기업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표('23.9.11) 하였으며, 그 취지와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납품대금연동제(법 제21조제1항 제4호)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

[필수 기재사항]

- 목적물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기준지표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요건
- 조정주기
- 조정일
- 조정대금 반영일
- 연동산식(반영비율)

-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예시

1. 당초 설계 도면상의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인 추가공사는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공사의 추가로 보아, 추가공사를 위탁할 때 또는 늦어도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2. 위탁기업이 수정추가공사 계약에서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탁기업에게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사후정산(선작업 후정산)으로 처리한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3. 위탁기업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불완전한 약정서발급으로 본다.

4. 실제의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위반행위

수령증 발급의무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물품 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발급(법 제21조 제6항)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약정서 발급 관련 수탁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

▶▶▶ 추가 공사가 있는 경우

✓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 증가로만 볼 수 없는 추가 공사는 새로운 공사로 보아 약정서 발급을 해야 함. 특히, 위탁사의 감독자 등이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약정서 없이 그러한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지시 등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금 부당 감액 또는 미지급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제조 위탁에서 여러 품목의 물품 생산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

✓ 동일한 수·위탁거래 당사자 사이에 여러 품목의 물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초기 거래 관계에서 약정서를 발급하다가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약정서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분쟁 발생시 수탁기업이 입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시작하기 전 약정서 발급은 필수!

✓ 특히, 수탁기업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분쟁발생에서 대금청구 요건 및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음.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01 질의 응답

Q **약정서 교부의무**

- 계약서에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그 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까?



A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 거래 계약에 있어 '단가'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면,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봄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서면미발급 관련 분쟁 대한 조정 협의 사례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건설업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산업용 기계부품 유통업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와 발전소 냉각탑 tube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 그러나 B사는 현장설명서 등의 배포만 받았을 뿐 정식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공사 용역을 수행
- 이에, B사는 공사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대금 약 9,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내부사정 등을 근거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기업과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
- B사는 서면미발급에 따른 대금미결제 위험성을 해소하고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자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A사 소명자료 제출
- 재단 전문위원을 통한 자율 분쟁조정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조정종료
- **(조정결과) A사가 미지급 용역대금 약 9,800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 등(제21조의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 · 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 · 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 지급의무

-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법 제22조 제1항)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의무

✓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함(법 제22조 제2항)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법 제22조 제3항)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법 제22조 제4항)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 유형

- 건설위탁 후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어음으로 지급한 납품대금이 부도처리 된 경우

(물품 등을 받은 날 기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날

1) 용역위탁의 경우 수탁기업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2)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 받은 날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유형

납품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유형

납품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는 경우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 지급의무 위반의 예시

1. 물품 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건축공사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이 사용승인한 경우 최소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승인일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와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건설위탁 시 수령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니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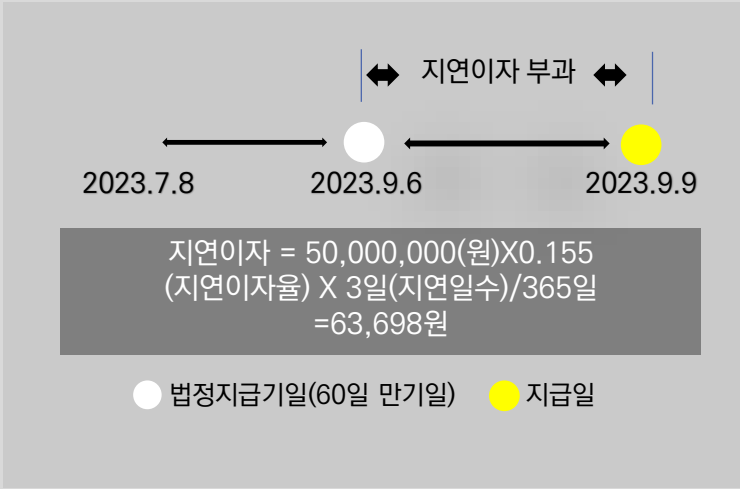


02 질의 응답

Q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3년 7월 8일 수령해서, 9월 9일에 수탁기업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때 지연이자는?



A 목적물 수령 후 60일 되는 날은 2023년 9월 6일이며, 이 경우 지연일수 관련 계산은 9월 7일 부터 계산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대금미지급 분쟁 조정 사례(1)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건설업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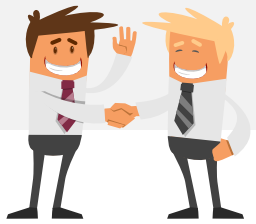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수탁
- B사는 계약기간 내 위탁 받은 유리공사를 완료한 뒤 A사에게 당초 약정된 대금 1억 5,400만 원을 청구
- 하지만 A사는 5,6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금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
- 이에, B사는 A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A사 소명자료 제출
- 재단 전문위원을 통한 자율 분쟁조정
- 당사자간 정산대금 최종합의
- **(조정결과) A사가 합의금액 1억1,990만 원(부가세포함)의 대금지급 완료**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대금미지급 분쟁 조정 사례(2)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중소기업)

제조업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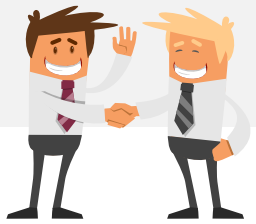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의료기기용 부품을 제조 위탁 받아 이를 납품함
- B사는 A사에게 3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잔금(약 70,000,000원)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음
- 이에, B사는 A사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경과 및 내용

- 지방청 → 협력재단으로 사전분쟁조정 의뢰(사건 이관)
-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조사 요청
- 재단 전문위원을 통한 자율 분쟁조정
- 당사자간 정산대금 최종합의
- **(조정결과) A사가 B사에게 2차례 분할하여 잔금 약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조정 의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법 제22조의2제7항)

-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2조의2 제1항)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법 제22조의2 제2항)

✓ 위탁기업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의2 제8항)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법 제22조의2)



납품대금협의제도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가능(법 제22조의2)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금조정 신청

조합원인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가능 (법 제22조의2제2항)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위탁기업]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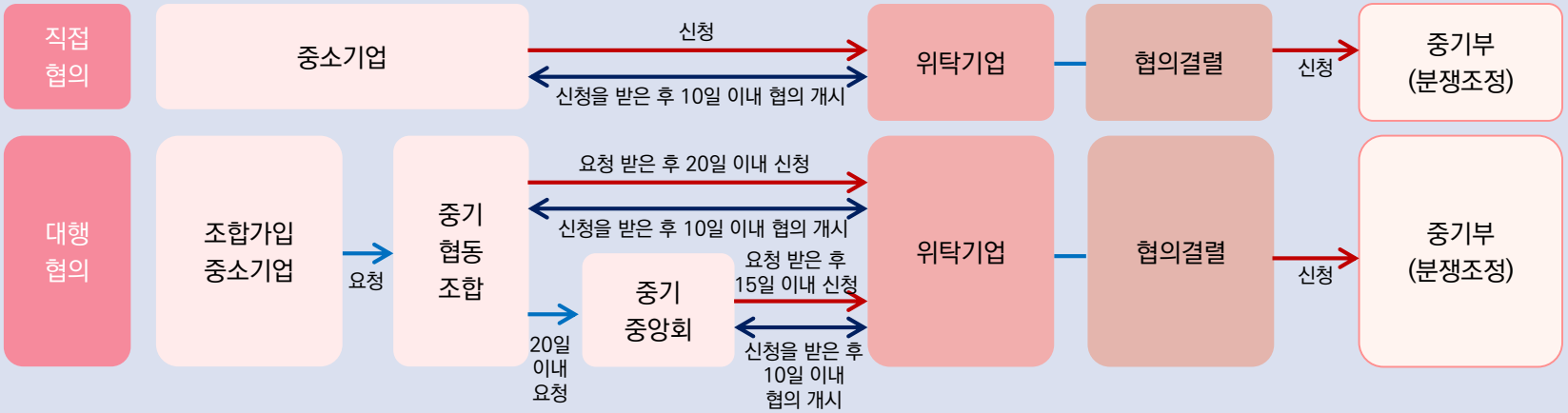


위탁기업의 협의개시의무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법 제22조의2 제7항, 제8항)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법 제22조의2)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진행절차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

적용대상	수탁·위탁 거래
협의주체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중앙회↔위탁기업
지원사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변호사 제도 안내 및 무료 법률상담(☎1357+내선 9)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의 예시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실질적인 납품대금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였으나, 대금 조정에 관한 책임의 수권을 받지 않아 대금 조정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

3.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급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

4. 잔여 계약물량, 수탁기업 경영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납품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납품대금조정에 대한 사례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고무제품 제조업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
- B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14차례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
- A사는 납품대금조정금액으로 4,500만 원을 제시
 * B사 추가비용 청구액(약 8,200만 원)
- 한편, B사는 A사에게 납품하는 부품 중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는 위 부품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
- 이에, A사의 행위가 상생법상 부당대금결정 및 부당발주중단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
-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한 이견 조정 (총 14회)
- 분쟁조정소위원회를 통한 조정권고안 도출
- 대금인상 최종합의
- **(조정결과)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17~47% 인상합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검사의 합리화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 (법 제23조 제1항)
-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법 제23조 제2항) 10일 이내 통보 원칙
-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1호)



〈물품 등의 불합격 사유 통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시행령 제15조)

✓ 물품 등의 납품 품명, 납품 수량, 납품 일자 및 검사 일자

✓ 불합격한 물품 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의 예시

1.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2. 완구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규격에 맞추어 제조한 후 납품하였는데, 위탁기업이 EU안전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경우

3. 위탁기업이 검사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물품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4.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되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의 불합격 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 디자인 용역 계약의 경우, 검수 기준이 불문명한 경우가 많아 납품일을 결정하는 객관적 불합격 사유를 계약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으나,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정한 다른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6. 검사기준의 강화에 따라 납품 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증액 없이 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03 질의 응답

Q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위탁기업이 신속히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은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해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되,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함. 단, 검사기간이 길어져 납품 후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전단)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물품 등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물품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2.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 예시〉

- 수탁기업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탁기업이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물품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물품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물품 등이 오손·훼손되고, 오손·훼손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령을 거부한 후 위탁취소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의 자금 운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고, 위탁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2.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위탁기업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위탁기업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물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7. 위탁기업의 모델단종,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등의 생산계획이나 사양변경 등의 설계변동을 이유로 수탁기업이 이미 생산 완료한 물품을 납기일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04 질의 응답

Q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자동차부품의 가공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였으나, 지정된 납기일에 납품하려고 하는 수탁기업자에게 판매부진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한·두달 후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재고조정을 하는 경우의 위법성 여부?



A



이미 제조위탁의 목적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위탁기업의 사정에 의한 수령거부는 상생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부당수령거부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파렛트 및 기타

산업용장비 임대업체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포장재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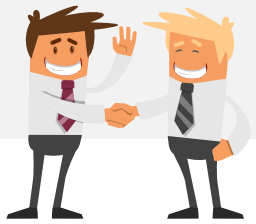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밀가루 포장용 대형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 받아 거래를 해왔으며, B사는 C사에 납품하여 옴
- A사는 C사의 입찰에서 유찰되어 재고소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의 제조된 제품을 수령 거부함
- 해당 제품은 A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 사양으로 제조된 것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기 불가능하므로 B사는 재고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
- 이에, B사는 A사가 발주한 물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대금 약 1억 원 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A사 소명자료 제출
- 재단 전문위원을 통한 자율 분쟁조정
- 당사자간 합의 및 합의서 검토
- **(조정결과) A사가 B사의 재고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4억8천만 원 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후단)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할때 약정한 납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의 예시

1.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등에 기재된 인하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 합의단가 적용일 이전에 납품 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그 단가 차액만큼 일시불로 환입 받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한 행위
3.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한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면서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행위
5. 위탁기업이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수탁기업과의 협의 없이 정식 납품단가를 결정하지 않고, 임시단가에 의하여 위탁한 후 정식납품단가를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내용보다 공사량 내지 원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3항)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1. 수탁기업이 계약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수탁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약정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단가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급원가 관련하여 수탁기업이 제공한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어 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대금을 깎는 경우

4. 수탁기업이 약정된 납기일을 위반하여 위탁기업이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깎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만큼 대금을 깎는 경우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금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 의 기준

1.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
2.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수탁기업이 제3자로부터 위탁 받아 지급받은 대가
3.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대가
4.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해당 수탁기업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지급한 대가
5.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해당 물품 등에 대해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것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에 해당 위탁기업이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거래유형에 속하는 수탁기업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을 해당물품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더한 대가
6. 기간 경과 등으로 당시의 제조 원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대금 협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탁기업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견적 금액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현저히 낮은 가격"의 예시

1. 작업의 노임 내지 부품 단가 등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2. 위탁기업이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하락,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폭의 도급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
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A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B품목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A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여 준 수탁기업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하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하여 준 행위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예산에 근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생산성 향상 목표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경우
5. 발주수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거래에서, 예상 발주량을 근거로 납품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상 발주량보다 낮은 수량을 발주하였음에도 이에 맞추어 단가를 인상하여주지 않은 경우
6. 정산과정에서 수탁기업에게 수의계약 등을 줄 것처럼 기만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7. 2개 이상의 품목에 관하여 종류·거래 규모·규격·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는 물가변동, 노무비, 원재료비, 경비 등의 공급 원가 변동 외에 위탁 내용 변경, 추가 위탁, 설계변경 등을 포함

*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를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받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

* 내용이 불명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해당 납품금액이 발주자의 지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증액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위탁 약정을 이유로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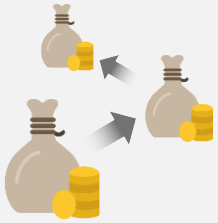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추가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증액해주는데 있어서 대금증액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대금증액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예시

1.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준 내용과 비율대로 수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
2.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증액해주지 아니한 행위
3.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도급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수탁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에게 대금 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물품 등의 구매강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의 예시

-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된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발주자나 고객이 제조 등을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이 금지하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의 구매나 외주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목표액 등을 정하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업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경우
3. 위탁기업이 자사 제품의 판촉 대상자에 수탁기업을 포함시켜 구매 또는 발주 담당자를 통하여 수탁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행위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할인불가능 어음지급 금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할인가능어음"이란 다음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의 예시(1)

1.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금형개발을 의뢰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임의로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2. 위탁기업이 제조 등의 업무를 위탁기업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탁기업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의 예시(2)

3.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위탁기업이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탁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4. 위탁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위탁기업의 책임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탁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5. 물품 등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수탁기업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탁기업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은 자신의 직원들 및 협력업체에게 급여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주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대물변제 금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8호)

금지되는 대물변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아파트 공사를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2. 중소 의류 제조업체가 대기업 의류업체에게 아동복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 의류업체에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재고의류로 변제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부당발주기피 금지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10호)

-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 한다는 것은 사전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청하는 것
- “**제조된 물품 등**”이란 제조가 완료된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된 물품,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 결과 등도 포함
- “**기피하는 행위**”란 제조된 물품등에 대해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발주를 지연하는 행위, 발주를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

부당발주기피의 예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부당발주기피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제조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냉각기의 개발 입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음
- B사는 A사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개발 및 양산 준비절차를 진행함
- 하지만 A사는 품질 기준, 납품 일정, 물량 공급 역량 등의 이유로 개발절차 중단을 통보
- B사는 위의 이유로 개발 중단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또한, A사는 개발 중단에 따른 금형 제작 비용 약 5,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B사는 개발준비 과정에서 약 13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 해야함을 주장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A사 소명자료 제출
-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한 이견 조정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조정종료
- **(조정결과) A사가 3억5천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정당한 사유 있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교부

-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2항)

기술자료 탈취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91.12.31.)	상생협력법 ('07.5.17.)	하도급법 ('10.1.2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14.5.28.)
보호 대상	"영업비밀"	"기술자료"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보호 요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물품의 제조방법, 생산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경제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비밀관리성)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성)
침해 유형	부정한 이익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유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부당한 사용·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
피해 구제	손해배상, 금지청구, 분쟁조정	시정명령, 과태료, 분쟁조정	시정조치, 과징금, 분쟁조정	시정권고, 분쟁조정
형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침해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침해시) ※ 공정위 전속고발권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13의2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시행규칙 제5조의4)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노무비 · 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 받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의 예시

-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위탁기업이 1차 수탁기업의 2차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결정요소인 단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위탁기업이 2차 수탁기업과 직접 단가결정을 한 후 1차 수탁기업에게 2차 수탁기업에 대한 재위탁거래대금 및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보복조치 금지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 제1항 제14호)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 위탁기업에 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행위"**는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법 제28조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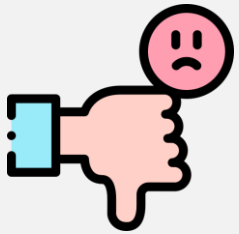
➡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발주량 감소, 발주중단, 수주기회 제한, 협력업체 등록 거절, 타 수탁기업과의 거래조건 차별, 그 밖에 거래 조건을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모든 행위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배~5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법 제40조의2)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예시



- ✓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그간 위탁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행위

-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수탁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행위
- ✓ 위탁기업이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수탁·위탁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위탁기업이 동종업계 다른 위탁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기타 위 (1) 내지 (5)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

수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품질보장 의무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 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함(법 제24조 제1항)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절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법 제24조 제2항)



약정위반 행위 금지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법 제25조 제4항 제1호)



부당한 가격인상요구 금지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25조 제4항 제2호)



질서 문란 행위 금지

그 밖에 수탁 · 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법 제25조 제4항 제3호)



Ⅲ.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사항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벌점 등(법 제28조의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행정 제재 유형	벌 점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
3	법 제27조제2항, 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
4	법 제27조 제3항,제4항 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공표	3.1



벌점등의 감면(제28조의3)

① 중기부 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기부 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의 경감기준(시행령 별표3)

- ✓ 법 제15조의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최우수2점 / 우수1점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 : 1점
- ✓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점 경감
- ✓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
 대표자가 교육명령 이행하면 0.5점 경감 / 담당 임원이 이행한 경우 0.25점 경감
- ✓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본점수와 추가점수 합산(0.25~2.0점) 경감
- ✓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에 따라(1점~2점) 경감

➡ **벌점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교육명령 제도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법 제28조의4)

[벌점기준] 당해년도 부과된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8조의2 제2항)

[벌점기준] 위탁기업의 최근 3년간 누산벌점 5점 초과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벌칙 및 과태료(법 제41조, 제43조, 시행령 제28조 별표4)



법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법 제43조(과태료)

- ✓ 교육명령 미이행 : 1백만원
- ✓ 서류 미비치 : 5백만원
- ✓ 조사시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조사방해 등 : 최대 5천만원
- ✓ 약정서 미발급 : 1천만원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대기업(500만원), 중소기업(300만원)
- ✓ 연동관련 탈법 행위 : 3천만원(1차위반), 4천만원(2차위반), 5천만원(3차위반)

기타 입증책임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제25조의2)

다음 사항의 분쟁해결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1) 연동관련 탈법 행위(제21조제4항)
2) 부당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제25조제1항 제1호)
3)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 결정(제25조제1항제3호)
4) 납품대금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25조1항제4호)
5) 물품 등의 구매강제(제25조제1항 제5호)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단,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제외

1. 제25조제1항제1호(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제3호(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금지) · 제7호(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 · 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 (기술자료유용 금지 관련 조항 제외한 사유로) 관계기관 고지,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기술자료유용을 관계 기관 고지행위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을 위반한 경우 ➡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Ⅳ. 수탁·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수·위탁분쟁조정제도란?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상생협력법」 제28조의5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운영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목 적) 수 · 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근 거) 상생협력법 제28조의5

(구 성)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기부 장관이 위촉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학·경제학·경영학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 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

(기 능) ①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

수탁·위탁 사전분쟁조정



수·위탁분쟁조정에 따른 효력

- **(집 행 력)**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상생협력법 제28조의10제8항)

 ➡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시효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상생협력법 제28조의9제4항)

 ➡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

- **(행정조치 면제)**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시정명령, 개선요구 등) 면제
 (상생협력법 제28조의9제7항)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대상

(상생협력법 제28조의10제3항제2호)

-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지급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납품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 위탁·수탁기업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수탁·위탁거래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수탁기업 또는 위탁기업
- **(신청방법)**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문 의 처)**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 1357+내선9, med@win-win.or.kr)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oll)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자율적 조정신청/분쟁조정 요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설립근거 및 대상업무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 · 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번없이) 1357 + 내선9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상담

✓ 수 · 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 · 신고(접수)

✓ 피해구제 방법(제도)안내

* 정부 · 지역별 · 업종별 신고센터 (전국 총 70개소)



분쟁조정지원

✓ 수탁 · 위탁 기업간 분쟁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지원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 자문 지원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
1357+내선 9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및 조치

✓ 중기부가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상생협력법 제28조)

➢ 사전검토(수위탁거래 해당여부, 조사개시 여부등)
➢ 법 위반행위 조사(자료요구,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조사종결, 무혐의, 조사중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안내



01 질의 응답

Q **신고센터 역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감사합니다